

매머드급 환경규제경보!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정부에서 환경오염피해방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이유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법화되거나 입법논의가 한창인 환경관련법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규(개정) 환경관련법 6개 중 환구법·화평법·화관법의 내년 1월 시행에 이어, 배출권거래제법·환통법·자순법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환경규제강화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6개 법률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요약·정리하고 대안으로 업계의 환경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환경경영 실천 등을 제시한다.

1 새로 도입되는 환경규제 6가지

- 환경부는 現정부의 국정과제 중 환경관련 과제 이행을 위해 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국정과제 중 환경관련 이행체계 마련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 5건의 법령을 2013년 이후 제·개정
 - 대표적 환경관련 국정과제로 ‘환경유해물질관리 및 환경피해구제강화’와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그리고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이 있음

환경관련법과 국정과제

구분	관련법	입법예고일	국정과제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13.5.22*	환경유해물질관리
2	화학물질 관리법 (이하 화관법)	'13.6.4*	
3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하 환구법)	'13.7.30 (의원발의)	환경피해구제강화
4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하 환통법)	'14.1.27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5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 (이하 자순법)	'13.9.13	자원순환사회 실현

주 : * 법률 제·개정일

자료 : 환경부 소관 국정과제(환경부, 2013), 법제처(www.moleg.go.kr), 각종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재구성

- 환구법, 화평법, 화관법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3)」 (이하 배출권거래제법)에 의거,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예정

2 6개 환경규제 주요 내용 및 산업계 영향

법명	환구법(안) ¹⁾	환통법(안)	자순법(안) ²⁾
시행 (예정)일	'15.1.1	'16.1.1	'16.4.1 ('15.1.1) ³⁾
추진경과	('13.9) 공청회 ('13.7~'14.2) 의원발의 ('13.11~) 민관협의체 운영 ('14.4.23) 국회 환노위 통과	('14.1) 입법예고 ('14.6~) 민관협의체 운영	('13.9) 입법예고 ('13.7~'14.2) 의원발의
주요내용	환경오염피해 유발자에 대한 피해 배상 책임 부여 및 보험·책임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환경오염 피해보상기금 설치	기존 9개 오염매체별 ⁴⁾ 허가를 1개의 통합허가로 제도 전환 하고 5년마다 허가 재검토 및 최상가용기법*(BAT) 적용 의무화 ⁵⁾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순환 자원이용 촉진을 위한 목표 및 성과관리 의무화
핵심쟁점	① 적법운영 인과관계 추정배제 ② 정보제공 거부권 ③ 시행시기 조정(공포 후 1년 유예) ④ 배상책임한도 예외사유 ⑤ 책임공제 삭제 및 보험으로 일원화 ⑥ 보험사의 보험인수 거부금지 조항 추가	① 통합허가범위·대상·절차 ② BAT 정의 및 의무적용 ③ 허가재검토 ④ 시행시기	① 법 제정주체 ② 폐기물 및 순환자원의 정의와 전환절차 ③ 자원순환 목표 및 성과 관리 ④ 소각·매립 부담금
적용대상	배출시설 사업장(248,447개소) 중 보험가입 의무대상 총 37,546 개소 ⁶⁾	20개 업종 ⁷⁾ , 대기 및 수질 1·2 종 사업장 ⁸⁾ 1,360개(57% 중 소·중견기업, 36% 중소기업)	목표관리 14개 업종 1,472 개소('12년 기준), 처분부담 금 18,000개소
벌칙	-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2천만원 이하 벌금 - 천만원 이하 과태료	- 5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 - 천만원 이하 과태료	-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계 영향	오염물질유출 및 환경오염사고에 대비, 보험 가입	주기적으로 동일 업종 내 BAT 에 준하는 기술 도입	재활용, 재이용 등 자원순환 의무 목표 달성 및 폐기물 처리비용 외 소각이나 매립 비용 추가 부담

주 1) 이완영 의원의 대표 발의(안)을 근거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계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쟁점사항을 협의하였고, 최종 협의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적법운영 인과관계 추정배제 조항이 삭제되어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2) 환경부 및 의원 입법을 포함 5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본 자료는 환경부 법안을 근거로 정리
 3) 이완영 의원의 발의법안에 따르면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임
 4)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토양오염시설, 비산먼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비점오염원 등
 5) 최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수 기술군(群) 및 운영방법
 6)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해양관리시설
 7) 화학 6(석유, 기초화학, 화학제품, 플라스틱, 비료, 합성고무), 대형 연소 3(발전, 소각, 증기), 금속 2(철강, 비철), 전자 2(반도체, 부품), 자동차 2(완성차, 부품), 기타 5(섬유, 펄프, 식료, 종이, 육류가공)
 8)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과 폐수를 일일 700m³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자료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환경부 보도자료, 개별법 민관협의체 회의자료, 각종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재구성

법명	화평법	화관법	배출권거래제법
시행 (예정)일	'15.1.1	'15.1.1	'15년중
추진경과	(’11.2) 정부 입법예고 (’13.5) 법률 제정, 공포 (’13.8~12) 협의체 운영 (’14.2)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12.11~’13.4) 의원발의 (’13.6) 법률 제정, 공포 (’13.8~12) 협의체 운영 (’14.2)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09.11)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10. 4)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12.3) 법률 제정, 공포 (’14.1) 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14.5) 운영세부지침 행정예고 (’14.7) 할당대상업체 선정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 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 활용함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와 화학사고 대응 수습체계 구 축 및 사전예방을 위한 설치· 관리·교육 기준을 강화하고 영업허가제 도입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 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 출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 는 부족분에 대해 타기업 과의 거래 허용
핵심쟁점	① 보고 등록범위(소량면제 등) ②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③ 등록신청자료 수준 ④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지정 ⑤ 신고 및 안전관리방안 ⑥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체계 ⑦ 유해화학물질 지정기준 ⑧ 중소기업 지원방안	① 영업정지 행정처분감경기준 ②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 ③ 장외영향평가서 비용 ④ 위해관리계획서 간소화 ⑤ 도급범위 불명확 ⑥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⑦ 허가 신고 기준 ⑧ 과징금 부과 기준	① 시행시기 ② 산업계 총할당량 ③ 업종별 할당기준 ④ 간접배출 포함여부 ⑤ 조기감축실적 인정방식
적용대상	신규화학물질이나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 (약 11,000물질, 6,800개 업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약 19,000개 업체)	최근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CO ₂ 업체 또는 25,000톤CO ₂ 사업장 '10년 기준 대상업체는 470개 (전체배출량의 60%이상)로, 그 중 28%인 130개 업체가 중소기업
벌칙	- 1년~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2억원 이하 벌금 - 천만원 이하 과태료	- 6개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사상자 발생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 - 천만원 이하 과태료	-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1억원 이하의 벌금 -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계 영향	자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 질정보(종류, 수량 등)를 파악하 고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보고·위해성 평가 실시 (화학물질당 870만원~5억4천 만원의 시험비용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진열·보관·운반계획 서 및 장외영향평가서,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배출권 구매(약 6조원 추가부담) ¹⁾

주 1) EU ETS '10년 평균가격 21,000원 적용, 배출권 부족으로 인해 과징금 추징시 28조 5천억원(과징금 상한선 100,000원 적용) 추가부담 발생

자료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환경부 보도자료, 개별법 민관협의체 회의자료, 각종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재구성

3 향후 전망 및 업계 대응

□ 새롭게 도입되는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부담 증가가 예상되며, 이러한 환경관련 규제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환경부 규제등록건수(규제개혁백서 '13): 740('10) → 780('11) → 816('12) → 850('13)

* 환경부 소관 부담금(22개¹⁾) 징수 현황: 23,571억원('11) → 25,025억원('12)

○ (화평법)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제출서류 간소화(정식 9→4개**) 대상은 축소 강화***

* 연간 100톤 이상('15) → 연간 70톤 이상('17) → 연간 50톤 이상('18) → 연간 20톤 이상('19) → 연간 10톤 이상('20)

** ① 등록신청자(제조·수입자)의 정보, ② 화학물질의 용도, ③ 식별정보, ④ 노출정보

*** 연간 1톤 미만('15~'19) → 연간 100kg 미만('20)

○ (환통법) 2016년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 2020년에 총 20개 업종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5종 사업장까지도 적용 확대

* 2개업종('16) → 3개업종('17) → 4개업종('18) → 5개업종('19) → 6개업종('20)

- 향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이후 점진적 확대(1~5종 전체 업종 대상) 예정

○ (배출권거래제법)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후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은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가운데 최대 10%를 구매해야 함

* 무상할당비율: 100%('15~'17) → 95%('18~'20) → 90%('21~)

□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법안별 쟁점사안에 대해 협의 중

- 화평법, 화관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수차례 논의를 거쳐 쟁점사항을 조율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하위법령(안)이 마련됨

- 환구법과 환통법(안) 제정 과정에서도 민관공동협의체가 발족·운영 중임

* 환구법의 경우 정부와 산업계간 최종 합의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됨('14.4월)

1) 환경개선부담금, 수계총량초과부과금(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총량초과부과금(대기, 수질, 기타수계), 수질배출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수질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하수도법),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부담금, 수계물이용부담금(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배출권거래제법은 지난 5월 세부지침이 행정예고 되었고, 산업계는 업체별 할당에 앞서 배출전망치의 전면 재산정을 요구하는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공동대응하고 있음

*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14.5.)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14.7.15)

□ 기업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환경경영 실천을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

○ 법률 제·개정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

○ 내부적으로는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부터 포장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을 고려하는 이른바 '환경경영'의 체질화가 필수

- 환경경영은 일개 부서나 본부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전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경주해야 함

참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 개요

-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주요경과

- ('09.7)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방안 확정
- ('1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 관련 조항(제47조) 포함
- ('13.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 ('13.12.9)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 결정
- ('14.7.21)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시기 연기 검토 중

○ 핵심쟁점

- 수입차 위주 보조금 지급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한적, 인센티브 정책도입 필요
- * 전기차 등에 해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미국), 해당 최대 5,000 파운드 보조금 지급(영국)
-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친환경차 보조금으로 10조원(9,300억엔) 이상 지원(일본)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기업경쟁력실 연구위원 장현숙 (6000-5154, zestjang@kita.net)

“
 무역의 길을 여는
 신뢰의 동반자,
국제무역연구원
 ”

현장

고객

미래

01. 현장중심
 무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현장 보고서 및 정책 대안 제시

02. 미래지향
 지속가능한 무역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한 상품, 서비스,
 FTA 등의 중장기 연구

03. 고객중심
 회원사, 정부, 유관기관의
 니즈를 반영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중심 연구 활동

국제 무역 연구의
Think Tank



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한국무역협회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